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방 위 산 업 발 전 및 지 원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1. 2. 5.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대상 및 절차, 국방중소·벤처기업 성장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운영(안 제2조)

국방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 의장이 되어 방위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근거와 절차를 규정함.

나. 방위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운영 방안(안 제6조 ~ 제7조)

방위사업청장이 매년 1회 실시하는 방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방위산업 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하여 방위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함.

다.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대상 및 절차 등(안 제8조 ~ 제9조)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고난이도 기술개발 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여 방산업체의 참여 위험도가 큰 사업’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그 지정 절차를 규정함.

라. 부품관리정책 수립 및 부품국산화 개발 촉진 방안 등(안 제10조 ~ 제15조)

국방부장관의 부품관리정책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과 방위사업청장의 부품국산화개발 촉진을 위한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의 선정 절차,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국방중소·벤처기업 성장지원 사업 확대(안 제16조)

국방중소·벤처기업 성장지원 시책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과 방위사업청장이 국방중소·벤처기업 성장지원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

바.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안 제23조 ~ 제24조)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양성기관 지정 절차 등을 규정함.

사. 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마련(안 제26조)

수출산업협력을 하는 방산업체를 위한 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

아. 공제조합의 설립, 사업 등(안 제28조 ~ 제36조)

방산업체등이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는 공제

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기사항,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출자증권의 명의개서 등을 규정함.

자. 출연기관(국방기술품질원) 위탁업무 지정(안 제37조)

방위사업청장이 부품국산화, 전문인력 양성, 자금융자 및 컨설팅, 수출진흥 지원 등에 대한 관련 업무를 국방기술품질원에 위탁하는 업무를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① 국가는 방위산업 발전 및 수출지원 등을 위하여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무기체계 국산화 촉진,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한다) 등 및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지원 등 방위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2.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방위산업 발전 및 수출지원 등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③ 협의회의 의장은 국방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은 상임위원·비상임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상임위원 : 국방부 · 산업통상자원부 · 기획재정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외교부 · 방위사업청의 고위공무원단 가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서 공동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2. 비상임위원 : 국무조정실 · 중소기업벤처부 ·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협의회가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 가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서 공동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간사 1명을 각각 두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공동의장은 방위산업 관련 산 · 학 · 연 전문가 중에서 제2항의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⑦ 실무협의회는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협의회나 실무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방위산업 관련 기관 · 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등

제4조(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며, 필요시 1년 단위로 이를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이 제1항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조제2항제5호 및 제9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7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대한 연도별 이행계획을 포함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방위산업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 등을 열어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 작성절차) ① 방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은 지침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될 분야별 내용을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에 통보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종합한 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조(방위산업 실태조사의 시기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시기·취지·내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권한을 위탁한 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6조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요청 대상 단체·기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인세법」에 따른 표준재무상태표, 합계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공사원가명세서, 기타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자료, 소득자료 및 사업자등록자료 : 국세청장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 적용 신고서, 영세율 매출명세서, 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 : 국세청장
3. 보수월액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4. 고용보험자료 : 한국고용정보원장
5. 수출 및 수입신고 자료 : 관세청장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방기술품질원

2.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
3.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제7조(방위산업 정보제공시스템의 관리 및 활용촉진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 정보제공시스템(이하 “정보제공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실태조사 자료 등 방위산업 관련 정보(이하 “방위산업정보”)의 수집·분석

2. 방위산업정보의 공유

② 방위사업청장은 정보제공시스템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방위산업정보의 관리를 위한 국내외 협력
2. 정보제공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업무
3. 정보제공시스템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4.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제공시스템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방위사업청장은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방위산업체등(이하 “방산업체등”이라 한다),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및 제3조제10호의2에 따른 일반연구기관, 이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은 국가안전보장 또는 정부간 계약에 따라 기밀로 해야 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범위, 보유·이용목적 및 제공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정보제공시스템을 활용하여 제3항의 자료 제공 기관에 방위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3장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등

제8조(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고난이도 기술개발 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여 방산업체의 참여 위험도가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에 포함된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전략적 연구개발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
2. 총사업비 5천억원 이상인 사업 중 산업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3.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 중 기술적·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4. 그 밖에 방산업체의 참여 위험도가 큰 사업이라고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법 제5조제2항제4호의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기준에 따라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이 때, 지정 여부 검토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소속으로 국가정책사업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의 검토 결과에 따라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방위력개선사업추진의 기본전략에 그 검토내용을 포함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9조(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에 따른 혜택)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해당 국가정책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산정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체상금률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납부할 지체상금의 총액을 계약금액(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하여 감경 또는 면제

2. 발주기관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유무와 관계없이 해당일수를 지체일수 산정에서 제외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하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기간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로 감경. 다만, 2분의 1로 감경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중하거나 추가로 감경할 수 있으며, 그 처분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처분을 면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 시 그 부과 비율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2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2분의 1을 적용

5.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제1호의 상한금액에 달한 경우 그 상한금액의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계약기간 연장

제10조(부품관리정책 수립·시행 등) ① 법 제9조 제1항의 부품관리정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무기체계 획득과 관련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입했거나 도입하고 있는 부품을 연구개발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기술과 국내·외 인력 및 설비를 사용하여 개발·생산하거나 부품의 성능·기능을 개선하는 부

품 국산화에 관한 사항

2. 부품의 고장 발생 최소화, 신속한 정비, 가동률 향상을 위한 부품의

신뢰성 제고에 관한 사항

3. 부품의 생산 및 공급이 중단되어 부품의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를

사전예측하고 관리 및 대응하는 부품단종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운용 및 전투준비를 위해 필요한 무

기체계 부품관리에 관한 사항

② 국방부장관은 부품관리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각 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의 관련 기관을 포함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 각 군 참모총장은 무기체계 부품의 획득 및 운용 시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수립한 부품관리정책에 부합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무기체계 부품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제2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부품 국산화개발 시험평가 지원) ①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기술지원 또는 부품 국산화개발 결과에 대한 시험평가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술 또는 시험평가지원신청서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내용 및 기간

2. 비용부담 내용 및 조건

② 방위사업청장은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부품 국산화개발 결과에 대한 시험평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각 군 참모총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를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조를 하여야 한다.

1. 무기체계 대여 및 양도

2. 국산화 부품의 체계장착시험

3.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부품 국산화개발 시험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국산화개발 부품 우선 적용 고려) ① 방위사업청장은 현재 국산화개발 중이거나 개발 완료된 부품(이하 “국산화개발 부품”이라 한다) 목록을 각군 참모총장·국방과학연구소장 및 방산업체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산화개발 부품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전력운영 사업계획 수립 시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국산화개발 부품 현황을 확인하여 사업 계획에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무기체계 양산계약, 운용에 필요한 정비 및 부품 계약을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국산화개발 부품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계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④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방산업체등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국산화 개발 부품을 확인하여, 수입재고품 수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3조(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법 제9조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나 단체”는 다음과 같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3.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5.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6. 「방위사업법」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7. 그 밖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제14조(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 선정요건 및 절차)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의 선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개발대상 부품이 다음 각 목을 고려할 때 개발 타당성이 있을 것
가. 개발 가능성
나. 기술 확보 필요성
다.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사항

2. 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시설·장비를 보유할 것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선정요건에 적합한 자를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로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를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출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개발사업의 과제
2. 개발사업의 책임자
3.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금액
4. 개발성과의 활용 및 기술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
5. 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정산에 관한 사항
6.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5조(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부품 국산화 개발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 제9조제3항의 출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제3항의 출연금을 받은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3항의 출연금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 국산화개발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가 용도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에서 체결한 협약에 따라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6조(국방중소·벤처기업 성장지원)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세부사업별 내용 및 추진계획
3. 예산 및 재원조달계획

②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2. 방위산업 관련 기술·경영·행정·법률 등에 관한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
3. 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지원
4.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학계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부품개발 및 국산화에 관한 기술 지원
5.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센터의 운영
6. 그 밖에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의 신청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④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제5호의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사업조정제도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

라 합의를 권고할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합의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사실조사의 방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업조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조사개시 10일 전까지 해당 대기업자·중소기업자 또는 방산업체(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제시하거나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과 장소
3.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4. 조사범위와 내용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사대상자가 동의한 경우
2.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의 업무시간에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에 조사대상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는 때에는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관
계인을 참석하게 하여야 하며, 사실조사 과정에서 관계인의 진술을 청
취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서(調書)로 작성하여야 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사실조사의 결과를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모두를 참석시켜야 한다.

1. 공인회계사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방위사업법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전문가

제19조(이행공고의 공표 방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공표를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며,
해당 대기업자 또는 방산업체 등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자 또는 방산업체에 대하여 권고사항의 이행을 명할 경우에는 해당 대기업자 또는 방산업체 등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조정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대기업자 또는 방산업체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사업의 인수·개시·확장 또는 투자의 일시 정지를 권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대기업자 또는 방산업체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자금융자 신청절차 등) ① 방산업체등이 법 제12조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융자추천을 얻어 해당 자금의 취급금융기관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이자와 제2항에 따른 자금융자 추천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보조금의 교부 등)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사업법」 제49조제1항의 명령에 의한 방산시설의 이전비용
2. 「방위사업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재의 비축에 소요되는 자

금의 이자

3. 정부의 방산물자 조달의 중단이나 발주량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유타화되고 있는 전용기기의 유지비와 종사자의 노무비
 4.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파괴되거나 멸실된 방산시설 또는 방산물자의 복구 또는 구매비용
 5. 정부의 방위산업에 관한 구조조정계획에 의하여 유타화된 방산물자 생산전용설비·기기의 철거 또는 폐기비용
 6. 방위산업체등 및 「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른 군용총포·도검·화약류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인명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할 수 있다.
- ③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소요자금명세서
- ④ 방위사업청장은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서 그 보조금으로 인하여 방산업체등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상당한 수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2조(보조금에 의한 재산의 양도 등)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의 양도·교환 또는 대부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및 사유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양도·교환 또는 대부에 대한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2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재교육 지원
2.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연계 지원
3. 방위산업 온라인 교육의 실시

제24조(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방위산업 관련 교육훈련 기관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전문 교수요원 인력의 적정성
2. 교육장비의 보유현황
3. 지원금 활용계획의 적정성
4. 교육 대상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③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
2. 교수요원 및 지원인력·시설·장비의 확보 현황
3. 교육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5. 교육규정

④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수출을 위한 핵심부품 등 기술개발 촉진
2. 정부보유 방산물자등의 양여 또는 대부 등
3. 국내업체의 방산물자등의 수출을 위한 정부간 판매협약 또는 계약의 체결
4. 수출하는 방산물자등에 대한 조세감면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방산물자등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출진흥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 또는 학술회의의 개최 및 참가 등에 따른 경비의 지원
2. 수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비용의 지원
3. 수출교섭을 위한 구매국 방문 및 구매국 주요인사의 초청방문에 대한 지원
4. 방산업체등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시장 조사·분석, 유망 수출품목 발굴 및 기술개발의 지원
5. 방산업체등이 수출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한 방산물자등에 대한 각군의 시범운용 지원
6. 국내 금융기관이 방산물자등 구매국에 대한 금융 제공시 비용의 지원
7. 그 밖에 수출진흥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③ 법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방산물자등을 수출하려는 자가 후속

군수지원 업무지원 조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기재된 수출 후속군수지원 종합관리계획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의 개요 및 범위

2. 구매국 정부가 요청한 후속군수지원 범위

3. 수출업체의 후속군수지원계획[부품 단종(斷種) 대비계획을 포함한다.

4. 정부나 관계기관에서 지원하여야 할 대상, 시기 및 지원에 소요되는 장비나 그 대가의 상환방법 등

④ 외국정부 및 방산물자등을 수출하는 자가 법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수출용 방산물자등의 개조·개발에 대한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기술보유기관에 기술이전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시험평가(수출을 위하여 기존 방산물자등을 개조·개발한 물자의 시험평가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각군 및 관계 부처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제4호에 따라 수출을 위한 방산물자등의 품질인증 지원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을 고시한다.

제26조(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치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방위사업법」 제52조에 따라 검토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구매국과 상호 감면 또는 면제하는 반대급부를 협의한다.

1. 구매국에 「방위사업법」 제20조에 따라 발생한 절충교역
2. 구매국에 대한 수출산업협력
3. 우리나라 및 구매국의 산업협력 적용비율

③ 방산업체는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한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신 이행 의사가 있는 「방위사업법」 제20조의 절충교역 계약상대방(이하 ‘해당 계약상대방’이라 한다)
2. 해당 계약상대방이 구매국에 대신 이행하고자 하는 행위
3. 방산업체와 구매국 간 대신 이행 행위에 대한 협의결과

④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 구매국 및 해당 계약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를 검토한 결과를 통보한다.

1. 제3항제2호의 「방위사업법」 제20조제3항 해당 여부
2. 제3항제2호에 대하여 해당 계약상대방에게 인정 가능한 「방위사업법」 제20조의 절충교역 가치

⑤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기준 및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장 전문기관 및 협회 등의 설립

제27조(협회 등의 설립)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단체는 20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목적으로 한다.

1. 방위산업에 관한 조사·연구업무
2. 방위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업무
3. 방위산업의 수출촉진을 위한 업무
4.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회 또는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 또는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방산업체등이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10명 이상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발기하고 20명 이상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방위사업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공제조합의 등기) ①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의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7. 출자증권 1좌(座)의 금액
8. 출자의 방법
9.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의 경우 주소를 포함한다)
11.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2. 대리인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호의 등기사항(사무소의 소재지를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의 총액의 변경등기는 매 회계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제30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공제조합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증권 1좌(座)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및 지분 계산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보증한도에 관한 사항

13.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보증내용에 관한 사항

14.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제31조(공제조합의 운영) ① 공제조합은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제조합의 업무 수행에 있어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에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2조(공제조합의 사업) 법 제2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구 등에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출자 또는 투자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 시 조합원의 자금융자에 대한 지급보증

제33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①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의 총 출자금은 조합원의 출자에 따라 공제조합이 발급한 출자증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③ 출자증권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제34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공제조합은 매 결산기마다 대위변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말 현재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위기 시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에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35조(고유식별번호의 처리) 공제조합은 법 제21조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6조(출자증권의 명의개서)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개서를 받아야 한다.

② 공제조합이 법 제2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취득한 지분을 처분하는 때에는 당해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뒤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37조(권한의 위탁)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2. 법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부품 국산화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부품 국산화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관리, 시험평가 지원 및 성과 관리

나. 부품 국산화개발 대상품목 조사·분석 및 공개

3. 법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진입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사업의 기술지도 및 기술 교류 지원

4. 법 제10조제2항제4호 및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방중소·벤처 기업 기술지원 및 육성사업에 대한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부품개발 및 국산화에 관한 기술지원

나.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 센터의 운영 및 사업관리

5. 법 제12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자금융자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자금융자 신청기업에 대한 사전조사 및 지원타당성 검토

나. 자금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한 성과분석·평가 및 현장확인을 통한 사후관리

6. 법 제1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시험평가에 관한 시험의 수행

7.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업무
 8. 법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중소기업 우선선정 품목 및 품목 지정의 기본대상이 되는 후보군에 대한 조사·분석 및 추천 업무
 9.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해외시장 조사·분석, 유망수출품목 발굴, 기술개발의 지원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실시하는 수출진흥을 위한 지원
- ②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혜택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규정은 법 제8조 및 이 영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중 이 영 시행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계약기간 연장 등이 발생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방위사업청 「국가정책사업 선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정된 방

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경우 법 제8조 및 이 영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및 제5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1조제2항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제1호 중 “「방위사업법」 제36조제1항”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③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7호 중 “「방위사업법」 제42조”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한다.

④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의3 중 “산업단지, 「방위사업법」 제3조제8호”를 “산업단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영에서 종전의 「방위사업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

용한 것으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전력정책과	
연 락 처	(02) 748 - 5674